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63
----------	-------

발의연월일 : 2026. 1. 6.

발 의 자 : 양부남 · 김남희 · 김한규
민병덕 · 박정현 · 복기왕
이해식 · 장종태 · 정준호
조계원 · 채현일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 개의 주요 정보 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분산 · 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 · 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필수 사항과 기준을 정한 현행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정보시스템의 분산 · 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에 관한 규정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1항제2호 중 “중요도”를 “중요도 및 제56조의3의 정보시스템 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적 지원을”을 “기술적·재정적 지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장비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7.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장애관리 예산 및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 ①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시스템의 <u>중요도</u> 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 ----- <u>중요도 및 제56조의 3의 정보시스템 등급</u>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장비의 교체에 관한 사항</u>
<신설>	6. <u>정보시스템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시스</u> <u>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관한</u> <u>사항</u>
<u><신 설></u>	<u>8. 장애관리 예산 및 투자 계획</u> <u>에 관한 사항</u>
<u>5. (생 략)</u>	<u>9. (현행 제5호와 같음)</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장애 대하여 정보시스템 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 <u>기술적</u> <u>지원을</u> 할 수 있다.	④ ----- ----- ----- ----- <u>기술적</u> <u>· 재정적 지원을</u> -----.
<u><신 설></u>	<u>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을</u> <u>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예</u> <u>방·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예</u> <u>산을 편성하여야 한다.</u>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